대구광역시 서구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과정

- O 제출일자: 2023. 8. 25.
- O 제 출 자: 서구청장
- 회부일자: 2023. 8. 28.(의안번호 제466호)
- 상정일자: 제24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9. 11.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김희자 경제과장)

가.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근거한 가스 사용 취약계층 타이머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O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지원, 지원대상, 지원신청(안 제3조 ~ 제5조)
- O 사업의 위탁(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진호)

가. 법적 근거 및 타당성

○ 본 조례안은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가스타이머콕을 가스 사용 취약계층에게 원활히 보급하기 위하여 그 제도적 근거와 지원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의 주요 내용이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안전환경 지원의 범위에 해당하며, 자치입법에 관한 제반 절차 역시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조례 제정의 요건을 두루 갖추었다고 판단됨.

나. 조문별 주요 검토 사항

-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의 기본 방향을 간결하게 기술하고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의 기본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며,
-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가스타이머콕 지원의 우선순위, 지원 대상,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인데,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대상을 명시해 두고 그 밖에 조례의 취지에 비추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재량 판단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한 점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 밖에 안 제6조에서 업무의 효율성·전문성을 고려하여 한국가스 안전공사에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위수탁 절차에 대해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지는 않았으나 민간위탁 조례에 그에 관한 적용범위 규정이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할 것임.

다. 종합 의견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가스 사용 취약계층이 가스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정하게 구성된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그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가현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의 일부 규정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집행기관에서는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시행 과정의 문제점을파악한 후, 유사 제도의 통일성 및 효율성 관점에서 관련 조례와통합 여부 등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심사결과: 원안가결